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수립 연구용역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담 당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과장 박정혁	☎ 044-201-4442	Fax:044-201-5696
	담당 사무관 권인혁 담당 주무관 임현수	☎ 044-201-4443 ☎ 044-201-4550	

❏ 목 차 ❏

I. 용역 개요	1
II. 주요 과업내용	2
III. 세부 과업내용	2
IV. 과업 수행지침	4
V.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8
VI. 보안대책	9
VII. 예정공정표	12
VIII. 제안서 작성지침	13
IX. 용역사 선정방법	15
X.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8
<붙임> 제안서 작성용 서식	20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수립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음
 - 수도권 외곽은 열악한 교통여건 등으로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GTX 등 광역교통의 도입으로 개발여건이 크게 개선
- 다만,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에서도 도심 수준의 어메니티·공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세권에 도시기능을 집중해야 하나,
 - 기존의 택지개발 방식은 저밀개발 위주로, 광역교통과 역세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 고밀개발, 용도복합 등 역세권 특화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콤팩트시티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
 - 또한, 다양한 공공택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구체적인 개발컨셉을 정립하고 개발모델을 유형화할 필요

3. 용역비(설계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통계 등 기초자료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하며,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 과업 착수시점 기준 최신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 국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중 신도시 및 공공

택지 조성·예정 주변지역 중심

- (내용적 범위) 콤팩트시티 개념 및 개발방안 등 연구, 제도개선 및 장애요인 분석·연구, 개발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검토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과업 내용

- ① 콤팩트시티 개념 및 기존 개발과의 차별성 분석
- ②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전략과 주거·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③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애요인 분석
- ④ 개발모델 유형화 및 적용방안 검토

III 세부 과업 내용

① 콤팩트시티 개념 및 기존 개발과의 차별성 분석

- 콤팩트시티 개념 정립

- 해외 선진국의 콤팩트시티 또는 유사 개발사례 조사

-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에 적합한 콤팩트시티 개념 정립

- 기존 도시·택지개발과의 차별성 검토

- 기존 유사 개발사례(공공주택사업 등)와의 차별성 검토
- 콤팩트시티 고밀·압축개발 필요성 및 도시맥락적 근거 제시

②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전략과 주거·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역세권 범위 설정 및 단계별 개발·특화 전략 마련

- 철도역과의 물리적 거리 등에 따른 역세권의 적정 범위 및 단계 설정
- 역세권의 단계별 중점 기능 확보 및 개발·특화 전략 발굴

- 주거서비스 제공방안

- 기존 개발지구의 자족·주거시설 등의 분포 및 이용활성화 사례분석
- 지구 내 적정수준의 공공편의, 어메니티 등 주거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자족기능의 수요분석 및 기존 도심과의 분담방안 검토

- 교통체계 수립방안

- 역 중심 교통체계, 대중교통·보행 친화적 설계 등 네트워크 구축 등
- 철도-버스 환승센터, 주차장, PM 등 환승시설 등 구축

③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애요인 분석

-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도시계획상 장애요인 분석

- 공공주택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지침 등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용적률·건폐율 등 조정, 개발밀도 상향 등 개발 허용범위 조정 검토

- 특별계획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도시계획 특례 적용 등
- 개발밀도 조정으로 확보되는 개발이익의 적정 환류방안
 - 광역교통시설의 운영·설치비용 분담방안 등

④ 개발모델 유형화 및 적용방안 검토

- 공공택지 맞춤형 콤팩트시티 개발모델 유형화
 - 해외 선진국의 역세권 개발유형 분석 및 현장조사
 - 국내 지역특수성, 지리적 여건, 자족·주거수요, 인근시설 등 개발요인 분석
 - 입지별 개발모델(주거중심, 자족중심, 혼합형 등)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
-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신규택지 적용방안 검토
 - 철도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의 적용방안
 - 철도 신설과 연계된 신규택지 개발방향 제시 등

IV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6)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7)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

- 1)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2) 중간보고 :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20일 전에 보고한다.
-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3. 세부과업지침

-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자문회의 등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등의 개최시기(일정) 및 세부내용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성과품 소유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 정책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자는 과업 착수 및 종료 시 붙임1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연구자는 연구종료 시 연구 성과품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민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붙임2의 '윤리점검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자료	계약 후 14일 이내	10부	과업수행계획 포함
중간보고자료	중간보고 개최 시	20부	
최종보고자료	완료 보고 개최 시	20부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50부	최종보고서, 전산파일 제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VI 보안 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방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II 예정 공정표

세부 추진 과업	착수일로부터 8개월							
	1	2	3	4	5	6	7	8
콤팩트시티 개념 및 기존 개발과 차별성 분석	■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전략 및 주거·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제도 개선 및 장애요인 분석				■				
개발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		
착수·중간·최종 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				■			■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2.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별도 용어 설명
-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 증빙자료 제시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덧붙임 하여 작성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A4용지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각 면(쪽)에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표기
-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용역사의 책임

3. 유의사항

가.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사항 외 별도 비용부담 불가
- 발주기관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용역사에 설명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함

-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용역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IX 용역사 선정방법

1.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발표일정은 별도 통보)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방법 : 전자적 제출(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과 임현수 주무관(044-201-4550)

마.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대학·법인 등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 수행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절차

-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동점 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3)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X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업체평가 (20점)	신용도	- 최근 3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여부	10	정량평가
	연구인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급) 투입현황	10	
과업수행 평가 (80점)	제안서 개 요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20	정성평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20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20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용역 수행경험 전문성 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100	

나.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신용도(10점)

배점기준	배 점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0
②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9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8
④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

○ 연구인력(10점)

구 분	10인 이상	8인 이상 10인 미만	6인 이상 8인미만	6인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도시개발, 주택, 건축, 부동산 관련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다. 정성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과업수행 부 분 (80점)	제안서 개요	20	20	18	16	14	12
	과업 접근방법	20	20	18	16	14	12
	수행계획	20	20	18	16	14	12
	투입인력	10	10	9	8	7	6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10	9	8	7	6

라. 평가방법

- 비계량 평가 시 점수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배점함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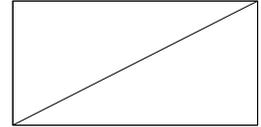
마.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채점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는 반올림함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붙임 > 제안서 작성용 서식



용역 제안서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수립 연구 용역」

2022.

업 체 명

<서식 2> 용역사 일반현황

1. 기관명			2. 대표자	
3. 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매 출 액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4> 연구인력 보유현황(00명)

분 야	생년월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

주) 1. 도시개발, 주택, 건축, 부동산 관련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서식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구 분	정지내용	기 간	사 유	관 계 법 령	비 고
용역 업체					
계					

- 주) 1.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예산회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함.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3.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4.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투입인력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00.0년	
연구원			00.0년	
연 구 보조원			00.0년	
보조원			00.0년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학위,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7> 투입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전공			자격사항			
본용역 참여임무				참여율			
주요 경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3.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발주기관 확인 필) 반드시 첨부

<서식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9>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10> 정책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중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

<서식 11> 정책연구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지, 이슈 페이지,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비뛰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